



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-0059호

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,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, 제16조, 국가  
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37조,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6조에서  
규정하고 있는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의 인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 법  
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‘숙련  
도시험 운영기관 지정기준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2년 2월 17일

기술표준원장

##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개정

| 구분 | 규격번호        | 규격명                     | 규격내용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개정 | KOLAS-R-006 | 숙련도시험 운영기관<br>인정제도 운영요령 | 별첨   |

별첨 : 1. 개정전문(KOLAS-R-006)  
2. 신규대조표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당시 부칙 제3조에서 폐지되는 고시에 의하여  
행한 지정 또는 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**제3조(폐지고시)**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“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지정기준  
및 지정절차”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307호 : 2008. 06. 20) 은 폐지한다.  
다만 이 요령에서 인정기구의 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, 이에 따라 제정된  
규정에 대하여는 인정기구의 장이 다시 정할 때까지 유효하다. 끝.